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5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송기헌·백혜련·이광재

인재근 · 김민기 · 허 영

황운하 · 김남국 · 최기상

김홍걸 · 조승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 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 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 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검사등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3심 재판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 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퇴직 등) ① ~ ④ (생	제14조(퇴직 등)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⑤ 특별검사등은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3심 재판이 선고되었
	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
	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건의 공소유지와 처리보
	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하
	되, 처리보고는 대검찰청 또는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하여야
	<u>한다.</u>